

2020년 9급 공채 교정학개론 (가책형) 문제 및 해설

- 임 현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 | |
|---|
| <p>☐ 범죄는 정상(normal)이라고 주장함</p> <p>☐ 규범이 붕괴되어 사회 통제 또는 조절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로 규정함</p> <p>☐ 머튼(R. Merton)이 주창한 아노미 이론의 토대가 됨</p> |
|---|

- ① 뒤르캄(E. Durkheim) ② 베카리아(C. Beccaria)
③ 케틀레(A. Quetelet) ④ 서덜랜드(E. Sutherland)

☞ 정답 : ①

☞ 해설 : ① 뒤르캄(E. Durkheim)은 집단적 비승인이 존재하는 한 범죄는 모든 사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병리적이기보다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범죄정상설을 주장하였고,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아노미(anomie)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통합력의 저하 또는 도덕적 권위의 훼손을 아노미로 규정하였다. 뒤르캄의 아노미이론은 개인의 욕망에 대한 사회의 규제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함에 대하여, 머튼은 아노미를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간의 불일치로 파악함으로써 뒤르캄의 이론을 보다 발전시켰다.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장비의 하나인 보안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 ㄱ. 포승 | ㄴ. 교도봉 |
| ㄷ. 전자경보기 | ㄹ. 전자충격기 |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 정답 : ④

☞ 해설 : ④ 보안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ㄴ과 ㄹ이다. 보안장비에는 i)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ii) 전기교도봉, iii) 가스분사기, iv) 가스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한다), v) 최루탄(투척용, 발사용 : 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vi) 전자충격기, vii)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가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6조).

ㄱ. (×) : 포승은 ‘보호장비’의 일종이다(동법 시행규칙 제169조 제8호).

ㄷ. (×) : 전자경보기는 ‘전자장비’의 일종이다(동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3호).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과정을 정하여 수형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③ 소장은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예외 없이 일체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④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의 난이도를 작업과정으로 본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종류 및 작업과정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 ③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동법 제71조).
- ④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동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조직폭력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
- ②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 ① 동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 제199조 제1항
- ② 동법 시행규칙 제200조
- ④ 동법 시행규칙 제201조

문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 ②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③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④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정답 : ①

☞ 해설 : 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는 i)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ii)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iii)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는 접견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이다(동법 제42조 제4호).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④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추두어야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②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 ③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 ④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문 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ㄱ.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 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ㄴ. 특별회계는 세출총액이 세입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신축·마련·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ㄷ.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작업장려금의 지급, 검정고시반·학사고시반 교육비의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일반회계의 세출에 |
|---|

산에 예비비로 계상한다.

ㄱ.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 정답 : ③

☞ 해설 : ③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ㄱ.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ㄴ. (×)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10조).

ㄷ.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동법 제11조의2).

ㄹ. (○) 동법 제7조·제8조

문 8.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발생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i) 매도·증여 또는 교환, ii) 용도 변경, iii) 담보 제공, iv)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① 동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③ 동법 제31조 제1항

④ 동법 제36조 제1항

문 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飲)·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검사는 법원으로부

터 치료감호영장을 새로이 발부반아야 한다.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併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飲)·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16조 제2항 제2호).

*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별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및 제3호(소아성 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는 자 : 15년

2. 제2조 제1항 제2호(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는 자 : 2년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併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동법 제18조).

문 10.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ㄹ.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ㅁ.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ㄷ, ㄹ, ㅁ

☞ 정답 : ③

☞ 해설 : ③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 (○) 소년법 제33조 제2항

ㄴ. (○) 동법 제33조 제3항

ㄷ. (×)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제7호(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1항).

ㄹ.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33조 제5항).

ㅁ. (○) 동법 제33조 제6항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③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여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 청원서가 아닌 말로도 할 수 있다.

④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① 동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 소장이 면담신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2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동법 제117조 제2항 단서

④ 동법 제118조

문 12. 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적인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③ 다이버전은 주체별로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 '검찰에 의한 다이버전',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 ④ 경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대표적인 '기소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대표적인 '기소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경찰과는 무관하다.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으로는 경찰의 훈방조치를 들 수 있다.

문 13.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
- ②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
- ③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양 당사자의 가족까지 만나 피해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 ④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와 국가 간의 경쟁적 관계에서 법정 공방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회복적 사법 이전의 태도이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및 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 및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대화를 통하여 반성과 피해 배상, 용서와 화해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화합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권장한다.

문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용자 구금제도는?

이 제도는 '보호' 또는 '피난시설'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영국 켄트지방의 지역 이름을 따 시설을 운영했던 것에서 일반화되어 오늘날 소년원의 대명사로 사용되곤 한다.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정, 교화하려는 제도이다.

- ① 오번 제도(Auburn system)
- ②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
- ③ 카티지 제도(Cottage system)
- ④ 펜실베이니아 제도(Pennsylvania system)

☞ 정답 : ②

☞ 해설 : ② 설문은 보스탈(Borstal)에 관한 설명이다.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는 1897년 브라이스(E. R. Brise)에 의해 창안되어 초기에는 철저한 분류수용을 거쳐 엄격한 규율에 중노동을 실시하고 출소 후에는 조직적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1906년에는 영국에서 ‘범죄방지법’에 보스탈 제도를 법제화하였고, 1920년 피터슨(A. Peterson)은 종래의 기계적인 복종과 강압적인 훈련방식을 비판하고 시설 직원의 자상한 처우와 완화된 훈련의 실시로 처우의 방식을 개선하였다.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②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 및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수용자를 이송, 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 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반드시 별도의 호송 차량에 탑승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동법 제79조·제80조
- ② 동법 제8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 ③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105조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는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방송통신대학과정,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 제2항).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하거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 교육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i)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ii)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의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63조 제3항).

② 동법 제6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③ 동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

문 1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③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④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정답 : ①

☞ 해설 :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i)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ii)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그 외에 성폭력범죄(동법 제5조 제1항), 강도범죄(동법 제5조 제4항),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동법 제5조 제2항 본문),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동법 제5조 제3항 본문)에는 모두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2호).

*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① 동법 제59조 제1항
- ② 동법 제60조 제1항
- ④ 동법 제63조 제2항

문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②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 ③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④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 정답 : ④

☞ 해설 : ④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1조 제2항).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 ② 동법 제6조 제2호

③ 동법 제6조 제3호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 20.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일탈·범죄행위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반응(reaction)과 이에 대해 일탈·범죄행위자 스스로가 정의(definition)하는 자기관념에 주목한다.
- ㄴ.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낙인, 공식적 통제기관의 처벌이 2차 일탈·범죄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본다.
- ㄷ. 범죄행동은 보상에 의해 강화되고 부정적 반응이나 처벌에 의해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 ㄹ. 형사정책상 의도하는 바는 비범죄화, 탈시설화 등이다.

- ① ㄴ, ㄹ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 정답 : ③

☞ 해설 : ③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 (O) 낙인이론은 사회반응이론으로서 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왜 사람을 일탈자로 인정하고 차별하며, 평가하여 자아의 왜곡된 의식을 심어 주는지에 주목한다.

ㄴ. (O) 낙인이론은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낙인이나 공식적 통제기관의 처벌이 사회반응을 통하여 오히려 범죄를 야기하게 된다고 보므로, 2차적 일탈의 중요한 원인은 공식적·비공식적 통제에 의한 낙인이라고 본다.

ㄷ. (X) 범죄행동은 보상에 의해 강화되고 부정적 반응이나 처벌에 의해 중단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이다. 낙인이론과는 관계가 없다.

ㄹ. (O) 낙인이론은 공적 통제에 의한 낙인이 2차적 일탈의 원인이 되므로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사정책적으로 비범죄화, 탈시설화, 다이버전(Diversion)의 실시 등을 강조한다.